

법원 “대주그룹 허재호 구속영장 발부, 다음주 결정”

지병 이유 지난해부터 불출석...변호인측 ‘공소시효 도과’ 주장 재판부 “면소 판결 이유 없어”...구속영장 발부 여부 두고 공방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78)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다음 주까지 결정된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 대한 6번째 재판을 열었다.
뉴질랜드에 머물고 있는 허씨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공판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소송 조건이 결여됐다’는 허

씨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면소 판결할 명백한 이유가 없다.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는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해부터 법정에서 출석하지 않고 있는 허씨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심문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고 “다음 주 금요일(11월6일)까지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항공권 예매 내역을 1차례만 제출한 허씨가 추후 예매한 사실이 있는지 묻은 뒤 “출석의

사를 자료로 판단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사는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피고인에게 최대한 인의 수사 원칙을 유지하며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줘야지만,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충분히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누렸다. 또 다른 특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차명 주식을 양도한 핵심 참고인의 진술이 중요하다. (허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해당 참고인은 허씨와 그의 지인으로부터 회유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

인의 그동안 태도, 추가 회유 가능성, 진술의 일관·신빙성이 결여될 수 있는 점, 실제적 진실을 범정서 밝혀야 하는 점 등으로 미뤄 조속한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관련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허씨가 해당 참고인과 재산상 또는 감정적 갈등을 겪어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허씨가 (혐의사실 중) 내지 않은 소득세 일부를 이미 납부했고, 지병으로 재판을 받기 어려웠을뿐 고의로 불출석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하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050주를 매도해 25억원을



취득하고서도 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7월23일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주식 차명 보유중 배당 소득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변호인 측은 검찰이 허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기간(2018년 5월)이 지나 기소(2018년 11월)했다고 주장했다.
신봉우기자



“가치 폄하하는 부동산 이용 안해요” 28일 대구 동구 한 아파트 단지에 특정 부동산중개소를 이용하지 말자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린 것과 관련해 관할 구청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사칭 보이스피싱 외국인 검거

광주에서 금융·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보관해 둔 돈을 훔쳐 달아난 외국인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보관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A(2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30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모 아파트 내 피

해자의 자택 출입문 앞에 놓인 현금 35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수수료 50만 원을 받고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은 피해자에게 “우편물이 계속 반송되는 걸 보니 금융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계좌에 예치한 현금을 모두 인출한 뒤 출입문 앞에 두면 직원

안전하게 보관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경기 지역까지 달아났으며, 총책의 지시를 받고 훔친 돈을 친구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범행 10시간30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김미희기자

질병청 “할리윈데이 의상, 마스크 대체 안돼”

침방울 다량 발생 행위 자제...개별 술잔·식기류 사용



방역당국은 할리윈데이(10월31일) 의상(코스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막는 마스크를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기자회견 설명회에서 이 같이 ‘할리윈데이 행사·모임 관련 방역수칙’을 안내했다.
이 방역수칙에 따르면 할리윈데이 의상은 마스크를 대체할 수 없다. 특히 마스크 위에 가면을 착용할 경우 마스크 접착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

의상의 경우 사람의 손질이 많이 닿는 대역 의상보다 개인 의상을 사용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할리윈데이 단체 행사·모임을 참석을 자제하는 대신 비대면·비접촉 모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행사와 모임에 참석해선 안 된다.
불가피하게 대면 모임을 가질 경우 가급적 10명 이내의 소규모 모임을 계획하도록 권고했다. 모임 시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밀폐·밀집된 유흥시설 등 다중이

용시설은 특히 혼잡한 시간대에 방문하지 말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되도록 짧은 시간 머무르고, 마스크 착용, 손 위생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모임 중 식음료 섭취 전·후를 포함한 실내, 사람 간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외에선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실내·외, 특히 이동·대기 중에는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신체 접촉을 자제해야 한다. 또 큰 소리치기, 노래 부르기, 응원 등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술잔, 식기류 등은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음식은 나눠먹지 말아야 한다.
불가피한 단체 모임에서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방역수칙을 숙지하고, 모임 참가자들이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모임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이를 다른 모임원에게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모임 참석 이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관찰하고,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호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